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운반기란 항공·해상 및 육상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

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을 포함하는 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설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해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원재료·부품·구성요소·하위조립품 및 상품을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생산자란 상품을 재배·채굴·사육·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재배·사육·채굴·추출·수확·어로·생산·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채집·수집·수렵 및 포획·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용된이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제 3.2 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제3.15조에 따라 운송되고 다음 어느 조건상 원산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그리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3.3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
-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품

제 3.3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된 원료 또는 광물성 상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상품
-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다호에 언급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뗏사냥에 의하거나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행하여진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아.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그러한 해저 혹은 해저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

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그리고
차.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
품만으로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제 3.4 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1.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
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
어진 경우

2.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상
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RVC = \frac{\text{FOB 가격} - \text{VNM}}{\text{FOB 가격}}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이다.

VNM은 제4항에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3. 제2항의 목적상, 재료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을 인정받지 못한 재료의 가치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것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가치 누적의 각 단계에서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 가.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 나.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이다.

5.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4항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 가.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수송하는데 발생한 국내수송비용, 그리고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증개수수료

제 3.5 조

간접재료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6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3.4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가. 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 작업¹⁾
- 나. 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 다.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
- 라. 단순한²⁾ 도장 및 광택 공정

1) 보존 작업은 건조·냉동·염장·통풍·필름·냉장·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 마.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
- 바. 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싱·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 사. 중형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 아. 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 트리밍 및/또는 결합
- 자.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방수·디케이팅·수축·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
- 차. 곡물 및 쌀의 탈각·부분 또는 전체 표백·연마 및 도정
- 카.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타. 탈피·씨제거 및 탈각
- 파. 박편·과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빼제거
- 하. 연마·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
- 거.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한³⁾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너.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더.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⁴⁾
- 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⁵⁾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
- 며. 단순한⁶⁾ 시험 또는 측정
- 버. 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 서. 동물의 도축, 또는
- 어. 가호부터 서호까지에 언급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각주 2 참고

4)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 반응**이란 생화학 공정을 포함, 분자 내부 결합을 깨뜨려서 새로운 내부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자내의 원자의 공간의 배열을 변경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의미한다.

5) 각주 2 참고

6) 각주 2 참고

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공정이 고려된다.

제 3.7 조

누적조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제 3.8 조

최소허용수준

1. 생산의 최종 공정에서 제3.4조 및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9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나.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 및 가치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준 무역 관행이어야 하며,
- 다.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0 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1 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 3.12 조 대체가능 재료

1.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 가. 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3.13 조 영역원칙

1. 제3.7조 및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2조부터 제3.12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제 3.14 조 영역원칙의 예외

제3.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3.2조부터 제3.12조까지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해당 당사국에서 수출된 이후 그 당사국으로 재반입된 재료에 대하여 교환각서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지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15 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제 3.16 조 해석 및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정을 통하여 국

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3.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그리고

다. 이 장에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된다.

제 3.17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을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

2.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제2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국은 기술·생산 공정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권고된 개정을 포함한 다른 관련된 사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제3.4조제1항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포함한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 또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